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29호

의 안 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의결연월일 2015. 11. 23.

주 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1월 23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희망의 새시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2015. 1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순서

I. 추진배경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기업규모별 적정 지원 한도 마련	6
2.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훈련비 환급 고지 강화	10
I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3

I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138번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협업과제(고충처리국) : 사업주 위탁 직업훈련 제도개선(2014년 연계과제)

-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와 고용의 질 향상, 능력중심의 노동시장 정립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
 - ※ 직업능력개발사업 : 국가(고용노동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사업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하지만 사업이 양적 확대에 중심을 두다 보니 집행과정 상 일부 분배의 비효율성 야기
 - 사업주직업능력훈련비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훈련기회를 주려는 취지와 달리 대기업 등에 편중
 - ※ 고용인원 대비 12%, 기업수 대비 0.1%인 대기업에 1403억(39.0%)지원
 - 훈련비 지원에 한도가 없어 일부 기업은 고용보험료 대비 지원액이 과다하여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 ※ 훈련 지원금 상위 1,000개 업체 중 281개 업체가 납부보험료 초과 수령
 - 반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 미환급 되는 훈련비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
 - ※ 미환급 사업장 수 '12년 31,201개⇒'14년 41,580개, 미환급액은 연간 평균 330억
- 따라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관련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여 각 기업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 추진경과 : 계획수립(8월), 실태조사(8~9월), 관계기관 협의(10월)

II

제도 현황

□ 제도 개요 및 법적근거

- (제도 의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 (관련 재원)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연도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액	322,524	330,775	359,555	456,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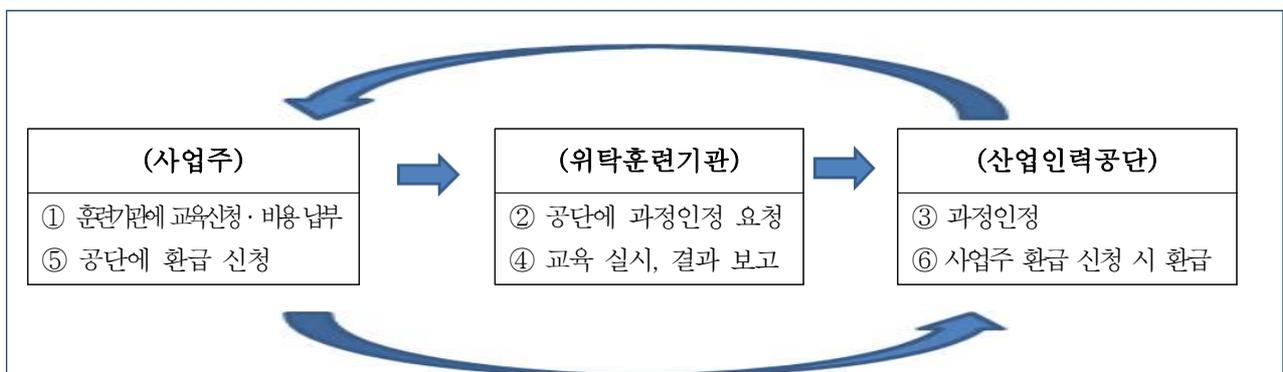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에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등)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종류

- (훈련 주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

<위탁훈련 절차>



- (훈련 대상)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과, 재직자 대상의 향상훈련, 전직자 대상의 전직훈련
 - 양성훈련은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① '훈련 전 채용약정 + 훈련 후 채용'을 요건으로 훈련비 지급, ② 훈련비 외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 ③ 연간 훈련비 지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향상훈련은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① '훈련개시일 기준 재직자 여부'를 요건으로 훈련비 지급, ② 훈련비 외 훈련수당 지급 불가 ③ 연간 훈련비 지원한도 적용
- (훈련 방법) 집체훈련, 현장훈련,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혼합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수행 기관**

- (고용노동부) 법령·정책수립, 기금관리, 지도·점검, 행정처분, 징수 등
- (산업인력공단) 훈련과정인정, 수료확정, 비용지원, 훈련과정 모니터링
-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위탁훈련과정인정 심사('15년 5월 개원)

□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	0.85%

*자료 : 고용노동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절차 및 기준

- 비용지원신청자 : 사업주
- 지급 신청 기한 :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 지원금의 종류 :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 지원금 신청방법 : HRD-Net 신청 또는 방문(우편,팩스) 신청
- 훈련금 지원금액
 - 집체훈련·현장훈련 : (직종별단가×훈련시간×조정계수×훈련인원)×지원비율

기업구분	훈련구분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모든훈련(외국어과정 제외)	120%
대규모기업	향상훈련, 양성훈련	80%
1,000인 이상 기업	단기향상	50%
	장기향상, 양성훈련	80%
외국어과정		50%
전직훈련, 전략산업직종훈련, 컨소시엄훈련		100%

- 인터넷원격훈련 : 훈련시간과 훈련과정 심사등급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 위 금액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 대규모기업은 80%, 1,000인 이상 기업은 50%

□ 201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실적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훈련비율은 50.2%, 300인 미만 사업장은 22.6%로 규모가 큰 기업이 사업주훈련에 더욱 적극적

(단위: 명)

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피보험자수	훈련실시인원		피보험자수	훈련실시인원		피보험자수	훈련실시인원	
11,930,602	3,615,999	30.3%	8,603,777	1,945,745	22.6%	3,326,825	1,670,254	50.2%

*이하 사업실적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훈련이 훈련인원의 대다수인 96.2%**, **훈련 지원금의 72.0%**를 차지

- 채용예정자 대상 양성훈련의 경우 훈련인원은 3.4%에 불과하나, 훈련지원금 비율은 25.4%로 높은 비중

(단위 : 명, 백만원)

지급대상		비용수혜인원		지원금실적	
양성훈련	소계	107,441	3.4%	90,996	25.4%
	자체	65,910	2.1%	38,303	10.7%
	위탁	41,831	1.3%	52,693	14.7%
향상훈련	소계	2,994,231	96.2%	258,791	72.0%
	자체	942,668	30.3%	98,438	27.4%
	위탁	2,051,563	65.9%	160,353	44.6%
기 타		10,340	0.3%	9,769	2.7%
계		3,112,312	100.0%	359,555	100.0%

○ 기업규모별 지원금 현황을 보면,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지원된 훈련비가 1,400억으로, 전체 지원금 대비 39.0%로 가장 많음

(단위 : 명, 백만원)

기업규모	비용수혜인원		지원금실적	
계	3,112,312	100.0%	359,555	100.0%
5인 미만	403,268	13.0%	80,262	22.3%
5~9인	183,259	5.9%	17,232	4.8%
10~29인	222,800	7.2%	22,017	6.1%
30~49인	113,278	3.6%	10,609	3.0%
50~69인	80,887	2.6%	7,118	2.0%
70~99인	101,701	3.3%	8,918	2.5%
100~149인	121,775	3.9%	10,627	3.0%
150~299인	295,683	9.5%	25,926	7.2%
300~499인	166,026	5.3%	15,442	4.3%
500~999인	263,044	8.5%	21,103	5.9%
1000인 이상	1,160,560	37.3%	140,297	39.0%
분류불능	31	0.0%	4	0.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업규모별 적정 지원 한도 마련

문 제 점

□ 납부 고용보험료 대비 과다 지원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은 훈련 대상에 따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훈련으로 구분됨
 - 양성훈련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한도가 없고, 향상훈련은 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의 100%를 한도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240%)
- 양성훈련의 경우 기업규모별 한도를 두지 않아, 고용보험료 대비 지원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비효율 발생
 - 14년 양성훈련 지원금 상위 1,000개 업체 자료 분석 결과, 납부 고용보험료 초과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이 680개, 초과수령총액 127억 3천만원

<양성훈련 지원 상위 1,000개 업체 중 고용보험료 대비 지원금 초과사업장 현황>¹⁾

(단위 : 개)

구분	계	1배 ~2배	2배 ~5배	5배 ~10배	10배 ~100배	100배 이상	초과액
2014년	680	147	259	112	106	56	127억 3천만원

*자료 : 고용노동부

1) 위 통계는 양성훈련 지원금만 계산된 것으로 향상훈련 지원금 포함 시 고용보험료 대비 초과 지원액 규모는 훨씬 커짐 (전체 훈련 지원금에서 양성훈련 비율은 24.2%, 향상훈련 비율은 72.0%)

- 1,000배 이상 양성훈련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도 18개 사업장

※ 위 18개 사업장은 허위로 채용예정자를 만들어 단기 고용보험 취득 후 훈련지원금 환급 후 고용보험 상실시키는 수법의 부정수급 의혹이 농후

▶ [고용보험료 대비 수 천 배의 직업능력훈련지원금 수령]

① 주식회사 □□물(대표 : 홍**)은 상시근로자 수 5명으로, 고용보험료 59천원을 내면서 양성훈련 지원금 2억여원을 수령, 고용보험료 대비 3458배 (2015년 권익위 실태조사)

② 한국요양△△△교육원(대표자 : 안**)은 상시근로자수가 1명에 불과,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내면서 양성훈련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수령, 고용보험료 대비 13,228배 (2015년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가 훈련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여 훈련기회를 우대하려는 목적과 달리 대기업에 편중

- '14년 향상훈련 지원금 상위 1,000개 업체 자료 분석 결과, 대규모 기업이 642개, 훈련지원금 총액은 1372억으로 전체지원금 대비 약 40%

▶ [대기업의 직업능력훈련지원금 과다 수령]

① 제과제빵 대기업인 (주)◆◆◆은(상시근로자 4,519명) 각 점포 개설시 신규 채용예정자에 대한 무분별한 교육 실시로 '11년 개산보험료가 10억여원임에도 향상훈련 3억2천만원, 양성훈련 32억4천만원, 총 35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납입보험료의 3배 이상의 교육훈련비를 환급받음 (2013년 권익위 부패신고 사건)

② 대기업 (주)◇◇◇은(상시근로자 10,396명)은 '14년 고용보험료가 8억1천만원임에도 향상훈련 지원금 18억3천만원, 양성훈련지원금 7억8천만원, 총 26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 납입보험료의 3.2배 환급 (2015년 권익위 실태조사)

▶ [직업훈련지원금 대기업 편중] 고용인원 대비 12%, 기업수 대비 0.1%인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이 직업훈련 지원액 4,787억원, 전체 43% 차지 (2015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개선방안

□ 기업규모별 적정 한도 설정

- (양성훈련 한도설정) 향상훈련과 같이 기업규모를 고려 한도 설정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우대를 위해 150인 미만 사업장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입 고려

<양성훈련 한도 예시>

상시근로자 수	현재	개선안 예시
1,000인 이상	한도없음	개산보험료의 100%
대규모기업 ²⁾		개산보험료의 100%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³⁾)		개산보험료의 240%
50인이상 ~ 150인 미만		
10인이상 ~ 50인 미만		
10인 미만		

- (총액관리제 도입) 각 훈련별 한도는 넘지 않으나, 훈련비 총액이 지나치게 특정 기업, 기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총액한도 마련
 - 총액한도는 연간 고용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설정
 - 총액 관리제 도입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 검토

※ 1단계 : 1,000인 이상 ⇒ 2단계 : 대규모 기업 ⇒ 3단계 : 150인 이상 등

2)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미만인 기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업종별 근로자 수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

① 제조업 : 500명 이하 ② 건설업, 운수업 등 : 300명 이하 ③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 : 200명이하 ④ 기타 : 100명 이하

< 총액관리제 도입 시 예시 _ '14년 (주) ◇◇◇◇ (대규모기업, 개산보험료 936백만원)>

구분	현 행	양성한도/총액한도 도입 시
양성훈련 한도	없음	개산보험료 100%
향상훈련 한도	개산보험료 100%	개산보험료 100%
총액 한도	없음	개산보험료 130%
양성훈련지원금	949백만원	936백만원
향상훈련지원금	831백만원	831백만원
지원금 총액	1,780백만원	1,216백만원
개산보험료 대비 지원금 비율	1.9배	1.3배

2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급 고지 절차 강화

문 제 점

□ 소규모 사업장 미환급 훈련비 증가

-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직업능력훈련비의 소멸 시효는 3년임
- 최근 3년간('12년~'14년) 시효 경과로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업주 직업능력훈련비는, 총110,524개 사업장에서 금103,527백만원임
- 미환급 사업장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12년 31,201개 ⇒ '14년 41,580개)이며, 미환급 금액은 연간 지원금 총액의 10%인 330억 수준

<연도별 사업주직업능력훈련비 미환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개)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훈련 인원	금액	사업장	훈련 인원	금액	사업장	훈련 인원	금액	사업장	훈련 인원	금액	사업장
미환급	1,066,192	103,527	110,254	384,013	37,978	31,201	334,821	32,095	37,473	347,358	33,453	41,580

*자료 : 고용노동부

- 더욱이 사업장별 평균 미환급액은 938,986원, 평균 훈련인원 9.1명으로 미환급의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대책은 없는 상황

<사업장별 평균 미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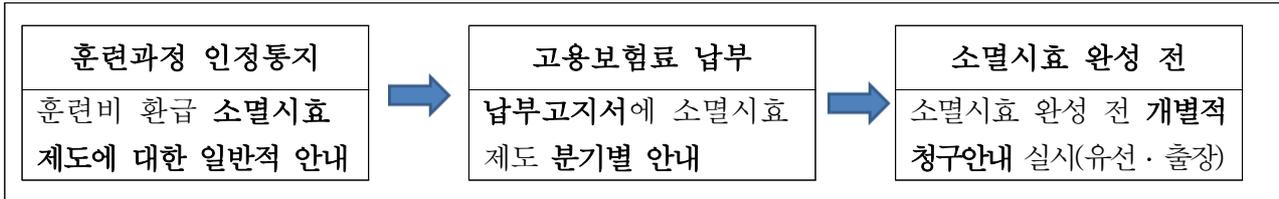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장별 평균훈련인원	사업장별 평균금액						
미환급	9.1	939	12.3	1,217	8.9	856	8.4	805

- 소규모 사업장에서 미환급이 발생하는 사유는 사업주직업능력훈련비 환급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비롯

개선방안

□ 직업능력 훈련비 미환급 사업장에 대한 고지 강화



- (일반적 안내) 훈련과정 인정통지/고용보험료 납부 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일반적 안내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에 소멸시효 안내문구 삽입 예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통지서
		[] 변경인정	
훈련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인정 훈련과정 (변경) 내용			
훈련과정명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훈련교사·강사
			인정일
변경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 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지사)		직인	
행정실판·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실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훈련비 지원금 소멸시효 제도 안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훈련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훈련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나,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자출용종)]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4대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서)에 소멸시효 안내문구 삽입 예시>



건강보험료 문의
☎ 1577-1000
연금보험료 부과 문의
☎ 국민번호 1355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문의
☎ 1588-0075

이상을 이용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건강보험상회

※ 환산 또는 구분고지서 모두 납부 가능하며, 환산고지서로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통납부 절차를 위하여 아래 통합발행 고지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이 도료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환납일입니다.

산출내역서(총합계) 사업장 명칭: _____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지인원	구분	고지인원	구분	고지인원	구분	고지인원	구분
① 산출보험료	원	① 연금보험료	원	① 월별보험료	원	① 월별보험료	원
② 정산보험료	원	② 연금공과금	원	② 정산보험료	원	② 정산보험료	원
③ 기납지부보험료(과납/과지)	원	③ 연금환급금	원	③ 연체료	원	③ 연체료	원
④ 사용자보험료	원	④ 연월분	원	④ 가산금	원	④ 가산금	원
⑤ 전납보험료	원	⑤ 고용유지장수납증상액	원	⑤ 순당매	원	⑤ 순당매	원
⑥ 환급금	원	⑥ 납입고액	원	⑥ 국고지환금	원	⑥ 국고지환금	원
⑦ 미지	원	⑦ 고지보험료 차감잔액	원	⑦ 고지보험료	원	⑦ 고지보험료	원
⑧ 고지보험료(연·월·일)	원	⑧ 납부보험료	원	⑧ 납부보험료	원	⑧ 납부보험료	원

고용보험료

사용자: _____

납부자번호: _____ 사업장 관리자번호: _____

납부할 보험료 (㉠+㉡+㉢+㉣): _____ 원

납부기한: _____ 까지

부과연월: _____ 원 연금: _____ 원
 월별 장기요양금: _____ 원 고용: _____ 원
 미 소액(㉠+㉡): _____ 원 산재: _____ 원

납기후급액: _____ 원 납기후기환: _____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고지서 (강출기 관용) 전자 납부가능

표준 OCR 발행번호: _____ 납기월: _____ 납기내: _____ 원
 발행번호: _____ 납기후: _____ 원

전자 납부번호: _____

입금: _____ 원
 전용: _____ 원
 계좌: _____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소멸제도 안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가 소멸 되므로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적 안내) 산업인력공단 각 지사별로 소관 사업장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장에 대해 훈련비 청구 개별 안내
- 훈련과정명, 소멸시효 만료일, 환급 신청 방법 등이 명기된 안내문 발송

<안내문 표기문구 예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수급 권리 소멸 안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훈련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귀 사업장이 지난 ○○년 실시한 △△훈련에 대한 소멸시효는 ○○○○년 ○○월 ○○일입니다.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 방문(우편, 팩스)신청 또는 HRD-net(www.hrd.go.kr)로 신청바랍니다. 제출서류 등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044-000-0000)로 문의바랍니다.

- 개별 사업장에 대한 유선 안내, 출장 안내 등 병행 실시

IV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령·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규칙),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기업 규모 별 적정 지원 한도 마련	<input type="checkbox"/> 양성훈련에 대해서도 개선 고용보험료 대비 적정 수준의 한도를 기업규모별로 설정 <input type="checkbox"/> 특정기업군에 훈련지원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총액 관리제 도입	'17.6월
소 사업장에 대한 훈련비 환급 고지 강화	<input type="checkbox"/> 훈련과정 인정 통지,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 시 훈련 지원금 수급 권리 소멸시효 고지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완성 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개별적 고지 의무화	'16.12월